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4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4. 23)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제안이유

-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도지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함.(안 제12조)
- 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아.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3.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p>○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대수는?</p> <p>○ 먼 거리에서 차량 요청시에는 민원인을 마냥 기다리게 하거나, 차량이 너무 늦게 도착하여 다른 일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데?</p> <p>○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수단으로 정착이 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차량 증가시에는 수탁 및 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p>	<p>○ 교통관리과에서 8대, 사회복지과에서 8대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음.</p> <p>○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겠음.</p> <p>○ 법과 조례가 개정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탁 및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제5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약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
2.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통약자관련 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이상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 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4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시 부천시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등의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제9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저상버스

제10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 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제12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특별교통수단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에 거주하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에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부천시 일반중형택시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이동지원센터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

단의 관리와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관할구역 범위 외 지역으로의 광역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자에게는 선정모집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교육 등

제19조(교육)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택시의 콜센터는 이동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택시 및 콜센터의 위탁 운영 관련사항은 운행차량의 차령만료 또는 운행중인 차량을 부천시로 이관 하는 때까지로 하고,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88호
의결년월일	2010. 4. 26 (제160회)

제출년월일 : 2010. 4. 1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로 하고,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도지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 10조 및 제11조)

마.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제5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약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
2.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통약자관련 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이상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 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4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시 부천시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등의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제9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저상버스

제10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 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제12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특별교통수단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에 거주하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에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부천시 일반중형택시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이동지원센터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

단의 관리와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관할구역 범위 외 지역으로의 광역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자에게는 선정모집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교육 등

제19조(교육)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택시의 콜센터는 이동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택시 및 콜센터의 위탁 운영 관련사항은 운행차량의 차령만료 또는 운행중인 차량을 부천시로 이관 하는 때까지로 하고,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